

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보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
① 지정통계	명 칭
	통계작성 승인(협의) 번호
	지정통계 지정의 연월일
	지정통계 지정 취소의 연월일
② 통계작성기관	명 칭
	주 소
③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근거 및 이유	근 거
	이 유

「통계법」 제1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통계의 지정취소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데이터처장

관인

작성 방법

- ① 지정통계의 명칭: 취소 대상인 지정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.
- ①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연월일: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시기를 적습니다.
- ③ 지정통계 지정취소 근거 및 이유: 「통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이유를 적습니다.

※ 지정통계 지정요건(「통계법」 제17조제1항)

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·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

- 1.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
- 2.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
- 3.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
- 4.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
- 5.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

※ 지정통계의 지정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